

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 강화 안내(2차)

①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 시, 고용허가 불허

- 시행시기: 농·어업 21년 1월 1일부터, 제조·건설·서비스업 21년 7월 1일부터
- 비닐하우스 내에 조립식 패널(샌드위치 패널) 또는 컨테이너 박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, 고용허가 불허
- 아울러, 비닐하우스 밖에 있는 가설건축물이라도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고용허가 불허
- 불허되는 민원 업무는 다음과 같음.
 - ①고용허가서 발급신청(신규·사업장변경), ②재고용 연장(1년 10개월 연장), ③재입국 특례(성실근로자), ④특례고용가능확인 발급신청

② 무허가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 시,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

- 시행시기: 2021년 2월 중 고시 개정하여 시행 예정
- 가설건축물의 경우 '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'을 받거나, 별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숙사로 인정
 - ※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요망
- 이미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기숙사로 제공 중인 경우에도, 추후 기숙사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

③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(사진·동영상 등) 제출 의무화

- 시행시기: 농업 20년 9월, 어업 21년 1월, 제조·건설·서비스업 21년 7월
- 기숙사 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(사진·동영상 등) 제출
- 제출 대상 시각자료는 다음과 같음.
 - ①주거시설 외부 전경, ②침실 내부(잠금장치 포함), ③화장실·목욕시설(잠금장치 포함), ④냉·난방시설, ⑤채광 및 환기시설, ⑥소방시설(소화기·화재감지기 모두 필요), ⑦수납공간
 - ※ EPS 사이트(www.eps.go.kr) 로그인하여 직접 업로드도 가능

④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

- 기숙사 미제공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한 뒤, 실제로는 부실기숙사(무허가 가설건축물 등)를 제공하는 경우,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
 - ※ 고용허가 취소 시, 취소일자로부터 15일 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해지하여야 함.

⑤ 우수기숙사 제공시 신규 외국인력 가점 상향

- 시행시기: 2021년 2월 신규 외국인력 접수시부터
- 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에서 우수기숙사 가점을 2.5→5점으로 상향

2021. 1. 15.

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외국인력팀